

제2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운영위원회(2015.03.05)

규칙안 검토 보고서

운 영 위 원 회

[전문위원 이 규 섭]

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5. 02. 23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의회의회장
- 다. 회부일자 : 2015. 02. 24.

2. 개정이유

- 거창군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회의규칙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- 가. 5분 자유발언 단서규정 신설(안 제33조의2제1항)
 - 군정질문이 있는 날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아니함
- 나. 5분 자유발언 신청시일 조정(안 제33조의2제2항)
 -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→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
- 다.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규정 신설(안 제33조의2제3항)
 -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의장이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음

4. 참고사항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(회의규칙)
- 나.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

- 다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.

5. 검토의견

- 이번에 개정하려는 규칙안은 거창군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회의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 내용은
 - 군정질문이 있는 날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않고
 - 5분 자유발언의 신청시일을 본회의 개의 24시간전까지로 조정하고,
 - 5분 자유발언 내용에 있어서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의장이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
- 그 밖에 일반적인 규칙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, 상위 법령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참고자료

관련법령 발췌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